

이천시 규칙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규칙

소관부서 : 감사법무담당관

제정 2017·11·30 규칙 제612호

제1조(「이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의 개정) 이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 중 “견습”을 각각 “수습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이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」의 개정) 이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지참”을 “지각”으로 하고,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부 비고란 중 “지참”을 “지각”으로 하며, 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카드 비고란 중 “지참”을 “지각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이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의 개정) 이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2항제1호 중 “행선지”를 “목적지”로 한다.

제4조(「이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」의 개정) 이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1호서식 공용차량유류수불대장 중 “행선지”를 “목적지”로 한다.

제5조(「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계기”를 “규정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이천시 재무회계 규칙」의 개정)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9조제3항 중 “현금불입”을 “현금 납입”로 한다.

제7조(「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금관리대장 중 “금회 불입액”을 “금회 납입액”으로 한다.

이천시 규칙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규칙

제8조(「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이천시
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적립금(정기적금) 관리대장 중 “불입액”을 “납입액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